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엄*남(고객번호 096435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1,8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5. 12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31번길 107(부암1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강*준(고객번호 096471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28,81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7. 12월~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31번길 89(당감1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손*태(고객번호 095705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25,97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4. 10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263번길 9-7(부암1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2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오*인(고객번호 07951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6,6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10월 ~ 2022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71-25(범전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2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6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전*자(고객번호 078377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1,9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6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76번길 10(범전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5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강*태(고객번호 098317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56,44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5. 04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31가길 32(부암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희(고객번호 403736-105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82,85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12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31번길 65-3(부암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5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우(고객번호 08631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57,5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7. 09월 ~ 2023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316-10(양정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5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철(고객번호 086317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91,37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7. 05월 ~ 2023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74번길 21-2(부암3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5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남*현(고객번호 08911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40,3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3. 11월 ~ 2023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65(양정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2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국토교통부(고객번호 085298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1,8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3. 11월 ~ 2023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로6번길 41-1(양정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2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국토교통부(고객번호 085298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1,8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3. 11월 ~ 2023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로6번길 41-1(양정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국토부(고객번호 097864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21,2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3. 11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48번길 26(부암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5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강*윤(고객번호 099817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236,8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08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23번길 21(부암1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(주)고담(고객번호 09808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393,67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3. 11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42번가길 20(부암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2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0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강*기(고객번호 079411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9,44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3. 11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마장로11번길 40-6(범전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3. ~ 2023. 6. 0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손*기(고객번호 096811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40,8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10월 ~ 2023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65(부암1동)

2023. 05. 23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